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운용 역 변경	발기 인 정보 변경	모펀드 투자대 상자산 취득한 도 변경	투자 대상 자산 추가	모펀 드 투자 대상 자산 추가	결 산	변동 성	기타
1	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○	-	-	-	-	-	-	-
2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 1 호(주식혼합)	-	주 1)	-	-	-	-	-	-
3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(주식혼합)	-	주 1)	-	-	-	-	-	-
4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-	주 1)	-	-	-	-	-	-
5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자투자회사 2 호(채권혼합)	-	주 1)	-	-	-	-	-	-
6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-	주 1)	-	-	-	-	-	-
7	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	-	주 1)	-	-	-	-	-	-
8	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	-	주 1)	-	-	-	-	-	-
9	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(주식)	-	주 1)	-	-	-	-	-	-
10	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 1 호투자회사	-	주 2)	-	-	-	-	-	-
11	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채권)	-	-	○	-	-	-	-	-
12	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채권)	-	-	○	-	-	-	-	-
13	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 1 호(H)(채권)	-	-	○	-	-	-	-	-
14	미래에셋슬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 2 호(채권)	-	-	-	○	주 1)	○	○	8),9),10)
15	미래에셋슬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-	주 1)	-	-	-
16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4 호(주식)	-	-	-	○	-	○	○	-
17	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주 2)	○	○	-
18	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주 2)	-	-	-
19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-	○	○	8),9)
20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21	미래에셋로저스 Commodity 인덱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-	-	-	-	주 3)	-	-	-
22	미래에셋자산관리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23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
no.	펀드명	운용 역 변경	발기 인 정보 변경	모펀드 투자대 상자산 취득한 도 변경	투자 대상 자산 추가	모펀 드 투자 대상 자산 추가	결 산	변동 성	기타
24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25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26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27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28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5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29	미래에셋전략배분 TDF 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30	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주 3)	-	-	-
31	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-	주 3)	-	-	-
32	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33	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34	미래에셋헤지펀드 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 간접형)	-	-	-	-	-	○	○	-
35	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-	○	○	10)
36	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37	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자투자신탁(일반상품 -파생형)	-	-	-	-	-	○	○	-
38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-	10)

2. 변경 사항:

- 1) 운용역 변경
- 2) 발기인 정보 변경
- 3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- 4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9) 법 개정사항 반영
- 10) 이해관계인 삭제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11월 29일 (수)

4. 변경 내용:

- 1) 운용역 변경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송진용	정도욱

2) 발기인 정보 변경

주1)

[정관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77조(발기인의 성명, 주소)	<생략> 대표이사: <u>이 병 성</u>	<생략> 대표이사: <u>이 준 용</u>

주2)

[정관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77조(발기인의 성명, 주소)	<생략> 대표이사: <u>이 병 성</u>	<생략> 대표이사: <u>최 창 훈</u>

3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
[투자설명서]

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 대상	-채권 <투자비율> <u>60% 이상</u> <투자대상 세부설명> <생략> 다만, 미국에서 달러화(USD)로 발행된 회사채로서,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채권에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<u>60%</u> 이상을 투자합니다.	-채권 <투자비율> <u>70% 이상</u> <투자대상 세부설명> <생략> 다만, 미국에서 달러화(USD)로 발행된 회사채로서,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채권에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<u>70%</u> 이상을 투자합니다.

4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
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 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 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<신설></u> <생략> <u><신설></u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<신설>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u><신설></u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[투자설명서]

주1)

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[제2부 별첨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 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 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--	--	---

주2)

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 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 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3)

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 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 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비용 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 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 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전(%)	변경 후(%)
-----	------	------	---------	---------

	등급	등급		
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투자자산신탁2호(채권)	5	5	<u>0.85</u>	<u>0.84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자산신탁4호(주식)	2	2	<u>23.61</u>	<u>17.58</u>
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산신탁1호(주식혼합)	3	3	<u>12.77</u>	<u>12.05</u>
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투자자산신탁1호(채권혼합)	<u>3</u>	<u>4</u>	<u>10.07</u>	<u>6.3</u>
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자산신탁1호(주식)	2	2	<u>22.2</u>	<u>17.43</u>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투자자산신탁1호(주식)	2	2	<u>22.79</u>	<u>18.42</u>
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자산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5	5	<u>2.93</u>	<u>2.69</u>
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투자자산신탁1호(채권혼합)	<u>3</u>	<u>4</u>	<u>10.24</u>	<u>5.3</u>
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투자자산신탁1호(주식)	<u>2</u>	<u>3</u>	<u>15.02</u>	<u>10.87</u>
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자산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2	2	<u>16.09</u>	<u>16.14</u>

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 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9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

		<u>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
--	--	--

10) 이해관계인 삭제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u><삭제>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정도옥 선임매니저

2) 주요 경력

(12년~15년) Ingensoma Arbitrage Ltd. / 선물옵션운용

(15년~17년) 이베스트투자증권 / 선물옵션운용2팀

(17년~21년) 국민연금공단 / 패시브투자팀(패시브포트폴리오 운용)

(21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

2. 운용 현황(2023.10.31. 현재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	2022-08-24	3,250
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2012-04-13	196,981

3. 운용성과(2023.10.31. 현재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	-1.43	-2.90	-3.27	-3.39
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-2.31	-4.56	-2.99	54.78